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구단108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6. 7. 자동차부품 제조업, 산업용칼날 제조업, 금형 제조업과 금속프레스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나. 원고는 2012. 7. 10. [redacted]구 B 공장용지 11,570.5㎡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redacted]강재로부터 매수하여 2012. 9.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9. 4.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6. 11. 원고에게, 당초 창업 업종이 아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는 기존 법인과의 사업 연관성 및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추징 사유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7. 9. [redacted]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redacted]시장은 2015. 8. 26.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285,456,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6,645,6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2,372,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목적사업은 "산업용칼날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금형 제조업, 금속프레스 가공업, 부동산 임대업"이고, C의 목적사업은 "스프링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가스기기 제조업, 기타 조립 금속 제품제조업" 등으로 목적사업이 서로 다르다. 원고는 설립 이후 사정변경으로 냉장고와 세탁기의 도어(문)를 제조하게 되었고, C이 제조하는 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두 회사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동일할 뿐, 중분류 기준으로 원고는 '전기장비 제조업'에, C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하여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그 운영을 위해 직접 기계 · 장비 등을 구입 · 설치하고 별도의 직원을 두면서 C과 별개로 운영되어 왔고, C의 기계 · 장비 등의 자산이나 종업원을 인수한 사실도 없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가 이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뒤늦게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인 2015. 9. 10.경까지 면제된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기간 동안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을 납부통지 한 시점인 2015. 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10.을 '사유 발생일'로 하여 30일이 경과한 2015. 8. 8.까지 당초 면제받은 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이전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은 1996. 5. 14. [redacted]구 D동 E를 소재지로 하여 스프링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부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2)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나,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고, C과 같이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부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3) C은 2012. 8. 6.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2013. 10. 25.경 공부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4) 원고의 주주현황은 사내이사인 F이 70%, 그의 처이자 대표이사인 G이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C은 F이 72%, 처인 G이 17%, 나머지 지분은 F의 부, 형제, 자매, 그 밖의 친족 등이 보유하고 있다.

5) C이 주식회사 [redacted]전자에 납품한 가전제품 부품은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냉장고 25개 부품, 세탁기 7개 부품, 청소기 5개 부품이고, 그 이후인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원고가 [redacted]전자에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중 냉장고 부품 18개(72%), 세탁기 부품 4개(약 57%), 청소기 부품 2개(40%)가 C의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품과 동일한 부품이다.

6) 2012. 6. 1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의 매출합계액 1,023,429,541원 중 C에 대한 매출액이 998,237,794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약 97.5%에 이르고, 2013년도 C에 대한 매출액은 32억 6,300만 원, 매입액은 17억 1,600만 원이며, 2014년도 C에 대한 매출액이 없으나, 매입액은 11억 6,000만 원이다.

7) 한편 원고는 2013년에서 시작하여 2014년에 이르러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모두 흡수하였다.

거래처		2012년도(원)	2013년도(원)	2014년도(원)
[redacted]전자(주)	C	22,994,856,661	16,109,303,803	0
	원고	0	16,386,671,291	41,504,748,916
[redacted]전자(주)	C	8,564,096,366	1,441,446,917	0
	원고	0	5,766,949,484	6,853,299,336
(주)[redacted]	C	1,210,548,224	2,841,604,850	0
	원고	0	2,912,276,903	8,284,647,041

8)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원고와 C의 매출처 내역에 의하면, [redacted] 주식회사,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H,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C, [redacted] 주식회사,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주식회사 등 매출처의 상당부분이 두 회사에 공통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제121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위 각 규정상의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는 생산, 고용 등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해 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인바,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목적사업의 동일성 여부, 대표이사 및 주주의 구성, 매입처 및 매출처의 승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원고의 공부상 표시된 목적사업이 다르기는 하나, 원고가 설립 이후 위 공부상 표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한 바 없고, 오히려 C과 동일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C과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C의 지배주주가 모두 부부인 F과 G으로서 그 지배주주의 구성이 동일한 점, ③ 원고와 C의 매출처의 상당부분이 공통되고, 2013년도를 거쳐 2014년도에는 C의 주요 거래처를 원고가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2. 8. 6. 공장건물의 화재로 C은 정상적인 생산 활동 등의 사업수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2013. 10. 25.부터는 두 회사의 공부상 사업상 소재지도 동일하게 되어 같은 장소에서 동일 사업을 영위해 온 점, ⑤ 원고가 C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신설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C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사업의 상당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자신을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자로 오해하여 신고한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일단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원고의 감면신청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의지할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 감면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보다 더 용이하게 감면사유 해당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감면신청을 수리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나) 가산세 기산일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적법한 감면사유 충족 후 사정변경에 의한 후발적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2. 9. 4.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2. 11. 5.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12. 5.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그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판사 정용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별지 1.

목록(처분내역)

처분 일자	처분 내역	처분 금액(원)					
		세액				가산금	합계
		최종 원금	원금 내역				
			최초(감면)세액	최초 가산금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015. 9. 10.	취득세	281,922,000	190,000,000	38,000,000	53,922,000	3,534,000	285,456,000
	지방교육세	26,292,200	19,000,000	1,900,000	5,392,200	353,400	26,645,600
	농어촌 특별세	12,196,100	9,500,000	-	2,696,100	176,700	12,372,800
	합계	320,410,300	218,500,000	39,900,000	62,010,300	4,064,100	324,474,4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별지 3

C이 [redacted]에 납품한 부품과 원고의 부품과의 동일성

순번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부품명	일치여부	부품명	일치여부	부품명	일치여부
1	bracket	○	bracket	○	body brush	○
2	can	○	fixer	○	spring	○
3	cap	○	frame	○	shaft	×
4	case	○	spring	○	base	×
5	chassis	○	cover	×	stopper	×
6	clamper	○	cover top	×		
7	door	○	washer	×		
8	handel	○				
9	hanger	○				
10	hinge	○				
11	lever	○				
12	pack	○				
13	plate	○				
14	reinf	○				
15	re/compspring	○				
16	shaft	○				
17	spring	○				
18	tray	○				
19	wire	×				
20	shelf	×				
21	guard	×				
22	washer	×				
23	blade	×				
24	fixer	×				
25	crusher ice	×				